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불편해소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복합게임 제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기존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증 사본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함

2) 게임제공업 등은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제한 업종에 해당되나 민원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자체에 허가·등록 시점에 인지하게 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에 영업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신설

나. 지자체 현장 애로사항 개선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시 처리기간을 ‘즉시’로 규정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서를 통해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유사한 신청절차인 ‘등록 또는 신고 사항 변경신청서’의 처리절차와 같이 처리기간을 ‘3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